



캘리포니아의 보호 및 옹호 체계
www.disabilityrightsca.org
수신자부담전화번호: (800) 776-5746
TTY: (800) 719-5798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PAIMI 보증사항에 관한 고충처리절차
(PAIMI Assurance Grievance Procedure)

미국 연방법에 의하여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과거에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서비스를 과거에 받았거나 받고 있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자, 또는 그런 개인이나 가족구성원을 대표하는 자를 위해 고충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개인을 위한 보호 및 옹호법 42 조 10805(a)(9)항(Protection and Advocacy for Mentally Ill Individuals Act. 42 U.S.C.10805(a)(9)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다.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가 아래의 연방법 보증사항들을 위반했다고 여기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보증사항에 관한 고충처리절차 (Assurance Grievance Procedure) 를 밟을 수 있다:

1.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과거에 받은 자;
2.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과거에 받은 사람이 가족중에 있는 자;
3. 그런 개인이나 가족구성원을 대표하는 자

연방법은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르는 것을 요구한다 :

1.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2. 권리를 보호하고 옹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3. 훈련된 직원이 있어야 한다.
4. 남용 및 무시에 관한 주장을 조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5. 법적, 행정적 및 기타 적절한 조취를 취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6. 의뢰인, 기록 및 시설에 접근가능해야 한다.

7. 기록에 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8. 의뢰인의 법적 보호자, 후견인, 주정부 이외의 대리인이 취한 행동과 중복된 행동을, 그러한 법적 대리인이 캘리포니아 장애인리의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한, 의뢰인을 대표하여 취할 수 없다.
9.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법적인 행동에 앞서, 모든 가능한 행정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0. 공동으로 우선권이 있는 다수의 위원회를 가져야 하며, 위원회원은 캘리포니아 장애인리 의뢰인을 광범위하게 대표하는 자와 자문단장을 포함해야 한다.
11. 자문단은 정책과 우선권에 자문을 제공하며, 수혜자, 기존의 수혜자 혹은 가족구성원이 자문단의 60% 를 차지해야 하고, 연간보고서를 완성해야 한다.
12. 일반인에게 우선권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13. 연방법의 목표를 더 깊이 적용하는데 법원판결을 이용해야 한다.
14. 보충, 이용, 비연방기금에 연방할당량을 이용해야 한다.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가 이러한 연방법 준수사항들을 위반했다고 여기는 자는,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대표자 (Executive Director) 에게,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의 보증사항에 관한 고충처리 신청서 양식 (Assurance Grievance Form) 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고충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고충처리 신청서 양식은 아래의 주소로 우송되어야 한다:

Executive Director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100 Howe Avenue, Suite 185 North
 Sacramento, CA 95825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대표자는 소송 대표자 (Director of Litigation) 혹은 기타 다른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직원에게 청구된 고충처리 사항의 적절한 법적인 분석을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대표자는 고충처리 신청서 를 받은지 **30 일** 이내에 해당 신청 사항에 관해 서면 결정을 내릴 것이다.

